

혼인신고

※두사람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국의 재일외국공관으로 문의바랍니다.

○혼인신고

결혼했을 때, 시구정촌의 사무소에 내는 신고입니다.

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본식으로 결혼할 때는 호적법규정에 따라서 혼인신고서를 내기바랍니다.

이 혼인신고에 따라서 외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.

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출입국재류관리청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 0570-013904
(IP,해외:03-5796-7112)

결혼했을 때에는 본국정부에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 절차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.
혼인성립 요건은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. 일본인은 일본의, 외국인은 그 나라의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(1) 신고하는 기간 : 임의
- (2) 신고하는 사람 : 혼인하는 두사람
- (3) 신고하는 곳 : 두사람 중에서 어느 한사람의 주소가 있는 곳, 또는 본적이 있는 곳의 시구정촌 사무소(일본인과 혼인한 경우)

니시노미야시에서는
니시노미야시청 시민과 0798-35-3128
또는 각 지소(토·일·공휴일 제외), 서비스센터(토·일·공휴일 제외), ACTA 니시노미야 스테이션

- (4) 필요서류
 - ① 혼인신고서 (시구정촌 사무소에 있습니다. 증인으로서는 성인 2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.)
 - ② 호적전부사항증명서(일본인)
 - ③ 혼인요건구비증명서(외국인)
(혼인요건을 구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대사관, 영사관에서 발행합니다.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번역자를 명기한 번역문을 같이 내시기 바랍니다)
(또한 이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거주지 시구정촌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.)
 - ④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(여권 등)
 - ⑤ 본인확인서류(운전면허증,여권등)



※주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신청하는 곳, 신청방법, 서비스 종류,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